신임교수 프로필

지난달 28일 전체교수회의에서 신임교수 18명이 신규임명됐다. 새로이 임명된 교수들을 직위별로 살펴보면 정교수 2명, 부교수 4명, 조교수 8명, 명예교수 1명, 대우교수 2명등이다. 이에 신규임명된교수들의약력을소개한다. <편집자주>

범 례
①직위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학력
⑤주요경력
⑥주요논문및 저서

□국문학과□

▲이미원

①조교수 ②1954. 6. 24 ③강남구 반포아파트 67—506 ④서울대 국문과, 미국 인디아나대학원석사, 미국 피츠버그대 연극과 박사 ⑤한양대 서울대 중앙대강사 ⑥가면극 (Kamyonguk; The Mask-dance Theatre of Korea), The Mask-dance Theatre of Korean Village.

□영문학과□

▲안상철

①조교수 ②1954. 9. 4 ④연세대 영문과, 동대학원 석사, 미국 일리노이스대 박사 ⑤미국 일리노이대 대우교수 ⑥The Interplay of Phonology and Morphology in Korean.

□행정학과□

▲박수영

①교수 ②1941. 3. 12 ③강동구 신천동 잠실 장미아파트24—201 ④본교 법학과, 미국 캔사스 주립대 대학원 석사, 미국 뉴욕대학 대학원 박사 ⑤미국 뉴저지주 정부 계획위원, 국토 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중앙도시 계획위원, 동부아시아 지역 계획 및 주택기구 상임위원 ⑥신도시개발의 전개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행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저서> 한국 도시개발론, 한국의 저소득층 주민과 도시 서비스, 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

□경영학과□

▲안서규

①부교수 ②1949. 8. 7 ③동대문구 회기동 109—112 과학원 아파트 108호 ④서울대 물리학과, 미국 오하이오대 석·박사 ⑤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대우교수, 국방관리 연구소 선임연구원 ⑥Optimization for Packing Various Types of Disks on a Circular Plate. Development of an Algorithm for a Multi-Processor Weighted Flow Time Scheduling Problem.

□무역학과□

▲손일태

①조교수 ②1954. 5. 21 ③동대문구 회기동 109—112(KIDA 아파트 404호) ④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석사, 동대학원 박사 ⑤국방관리연구소 연구원, 노스웨스턴대 조교 ⑥The Choice of an Optimal Exchange Rate System for a Small Country.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under Fixed and Flexible Exchange Rate.

□치의학과□

▲최대균

①조교수 ②1949. 12. 26 ③동대문구 청량리동486 ④경희대치의과, 일본대 치학부 박사 ⑤일본대 치학부 전임강사.

□사회과학대 회계학과□

▲이준규

①전임강사 ②1957. 12. 10 ③강남구 단초동 산65번지 ④건국대 경영학과,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석사 ⑤공인회계사 합격, 한국 공인회계사 기업회계연구위원.

□우주 과학과□

▲김원규

①부교수 ②1941. 1. 26 ③대전시 중구 문화동1—38 ④서울대 전기과, 동대학원석사, 본교대학원박사 ⑤국방과학연구소선임연구원, 동연구소 연구개발실장 ⑥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원격무선조종시스템 부호기, 복호기설계 제작.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터보 제트엔진의 연료제어 시스템설계및 응용에 관한연구.

□섬유공학과□

▲우제린

①교수 ②1928. 2. 14 ③중구을지로6가52 ④서울대 섬유공학과, 미국 MIT 기계공학과 석사, 호주 뉴 싸우스 웰스대 박사 ⑤서울대 공대 조교수, 호주 농무성 섬유연구소 주임연구관, 호주 뉴싸우스 웰스대 교수 ⑥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School of Textile Technology.

□체육학과□

▲손두옥

①조교수 ②1942. 6. 20 ③강남구 역삼동 659—19 ④본교 체육학과, 동대학원 석사 ⑤성균관대 강사, 본교 럭비부 코치, 대한 럭비협회 기술연구 분과위원장및 대표선수 강화 위원회부위원장 ⑥럭비 풋 볼 경기시 키크 (KICK) 와 테클 (TACKLE) 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대 무역학과□

▲김한원

①조교수 ②1950. 2. 22 ③용산구 이태원동 청화아파트 8—905 ④단국대 경제학과, 이태리 후로비스성심대 석사, 이태리 밀라노 국립대학원 박사 ⑤이태리 밀라노대 강사, 이태리 밀라노 카톨릭성심대 연구위원, 한성대 강사 ⑥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경제개발 조건의 형성과정.

□자연과학대 물리학과□

▲김엽

①부교수 ②1952. 8. 29 ③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707 wcks아파트18동 703호. ④서울대 물리학과, 한국 과학원석사. 미국 펜실바니아대 박사 ⑤미국 Purdue대 연구 조교 ⑥Hysteretic Behavior of the Site-Pilnted Isin Anitferromagnet in Applied Uniform Fields.

□체육과학대 체육학과□

▲강동원

①부교수 ②1942. 12. 8 ③동대문구 이문2동 264—410 ④본교 체육학과, 동대학원석사 ⑤대림공업전문대 부교수, 상명여대 부교수, 대학테니스 연맹 이사 ⑥기초체력에관한 조사연구, 특정 훈련이 청년후기의 체력에 미치는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건축공학과□

▲이후관

①조교수 ②1943. 12. 12 ③은평구 녹번동 144—42 ④서울대 건축과, 동대학원 석사 ⑤성지종합 설계 사무소, 본교 강사, 영국대사관 사무실, 삼척산업포항공장, 독립기념관등설계 ⑥H형보 기둥의 十자형 접합의 소성설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대 경영학과□

▲박원규

①조교수 ②1950. 9. 8 ③종로구 체부동 211—1 ④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콜렌대 석사, 동대학 박사 ⑤대정상사 무역부장 ⑥Government Behavior. Market Structure and Export Performance: The Korean Case.

□법학과□

▲서돈각

①명예교수 ②1920. 11. 3 ③종로구 이화동27—2 ④경성대학 법문학부, 서울대 대학원 석사, 미국 서던 메소이스트대 L. LM 학위, 본교 대학원 박사 ⑤서울대 법대교수, 동국대총장, 경북대총장, 학술원정회원 ⑥<저서> 상법연구 Ⅰ·Ⅱ, 商法大意

▲박윤흔

①대우교수 ②1935. 3. 30 ③성북구 동선동5가147—1 ④서울대 행정학과, 동대학원 석사, 고려대 대학원 박사 ⑤법제처 법제조사국장, 법제처 차장, 한국공법학회 이사 ⑥권력분립과 그 현대적 의미. 행정법상의 의무속행 확정수단에 관한 연구, Rule-making under the A. P. A of the United States.

□작곡과□

▲권용진

①대우교수 ②1945. 7. 1 ①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3동 707호 ④본교 작곡과, 동대학원 및 서독 뮐른 국립음악대학원 석사 ⑤한국 평론가협회 부회장, 아퀴나스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한국 광고시장 개방 추세와 대책

종속과 주체성의 기로에선 광고시장

과다한 광고비 지출이 다국적 광고회사 유혹

김세준

Ⅰ. 광고시장의 현실

금전이나 서비스가 교환되는 장소와 상황을 시장이라 정의한다면 광고시장은 광고업무와 관련된 매체, 제작, 대행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개방」은 5년전부터 급속도로 불어나는 외국회사의 국내설립과 맥을 같이하는 다국적광고대행사의 한국진출을 의미한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개설이 허가 되었을때 한국경제의 종속우려와 이에대한 반발이 드셌던 것처럼, 영화수입의 자유화, 보험지사의 설립과 함께 외국광고회사의 상륙은 상품→금융→문화로 이어지는 개방패턴으로 인식되어 큰 반발을 사고있다. 광고의 속성이 정보와 언론과 문화의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시장의 개방은 이제 한국이 냉엄한 세계무대에 발가벗고 나가는 격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광고시장을 지키는 것이 문화개방에서 정치개방(?)으로 넘어가는 길목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이 문제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러한 광고의 미묘한 속성과 역할 때문에 광고계의 대체적인 의견도 마지막 보루를 지키자는 쪽이고 정부도 미국측의 끈질긴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

올해중으로는 외국대 행사의 투자가 어렵다하지만 이미한국의 주요대행사들이 미국·일본의대행사들과 업무제휴를 하였고, 88올림픽의 주최와 한국경제의 국제경제질서에로의 편입이라는 국가적기본방침에 힘입어 10년내에 자본투자 허용조치가 내리면 이미업무제휴를 하고있는 미국회사들이 먼저합작이나 지사설립형식으로 투자를 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 로부터 매체커미션 수수인정을 받고있는 대행사는 8개사인데 이들중 미국광고회사와 제휴한 대행사는 별표와같다.

현재 한국의 총 광고비는 년간 7천억원이며 GNP에 대한 광고비 비율은 1.1%를 육박하고 있다. 이중 광고대행사가 다루고있는 물량이 60%가 넘는다. 이와같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광고비 지출이 다국적 광고회사들의 한국진출을 유혹하는 요인이 되었다.

<표>

광고사명	모기업	제휴회사
제일기획	삼성	테드베이츠
오리콤	두산	맥켄 에릭슨
연합	MBC	후트 콘앤 벨딩
나라	독립	제이 터 톰슨
대홍	롯데	싹치 앤 싹치 콤튼
코래드	해태	오길비 앤 매더

이 광고시장의 개방은 시간문제일것으로 보인다.

Ⅱ. 개방 찬성론

한국광고시장 개방압력이 구체화 된것은 작년 9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일종의 개방요구서이다. 한국광고계의 찬성론자들도 상공회의소의 의견과 비슷하므로 요구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한국경제가 국제화되고광고거래규모가 커졌으므로 외국회사와 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2) 미국대행사는 마케팅과광고기술을 전해 줄 수 있다.

3)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광고시장 개방이 가장 용이하다.

이상의 이유 중에서 특히 한국 찬성론자들의 구미를 끄는 것은 기술(Know-how) 이전과 수출 촉진이다.

Ⅲ. 개방 반대론

위와같은 개방이유에대해 한국광고협의회에서는 즉각개방 반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정부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아내었다. 반대이유는 아래와같이 요약할수있다.

1) 한국광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2) 광고산업 발달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한다. 특히 KOBACO의 제도는 불합리하며 광고산업발전을 저해한다.

3) 광고산업은 언론·분공정책분야와 연속되는 산업이므로 외국인에의 개방은 문화종속과 매스컴에의 간섭을 초래한다.

4) 광고시장개방은 무역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5) 광고대행업은 기술용역 분야이므로 적은 투자로 많은 과실 송금이 예상된다.

6)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광고개방을 법적으로 막고 있다.

이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광고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반대이유는 미국 광고회사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고도의 기술로 현재 한국의 대행사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물량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Ⅳ. 개방의 선행조건과 대책

여러가지 국내외여건을 살펴볼 때 광고시장 개방은 조만간 닥쳐올 것인데 이에 대해 한국광고산업이 정부의 투자금지규정에만 의지하는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바람직한 대처방안은 제도적으로 외국대행사의 자본참여를 우선은 50% 미만으로 제한하여 국내광고회사가 면역력을 기를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한다.

또한 KOBACO의 이익을 광고산업육성에 돌리고, 매체의 시청율 구독율을 공개하여 과학적인 광고업무를 펼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계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광고회사들이 분열되어 서로 극심한 광고량 탈취 싸움에 기반대의 소리는 어쩌면 그동안 한국광고가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자인하는 아우성일지도 모른다.

이런 한국광고계에 외국의마케팅기술, 광고경영기술등이도입되는것은 국내 광고계에 새 자극과 활기를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예상되는 지나친시장잠식은 제도보완을 통해 억제하고 광고인들이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외국 광고대행사의 한국시장 참여는 오히려 우리가 환영해야 할일이다.

필자는 관심이 모아지고있는 학생신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수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 쉬운 예를 들므로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려 한다.

일본은 일찍부터 광고시장을 완전개방하였지만 외국 광고대행사는 겨우 15위에 머무르고 있고 미국의 아이디어는 문화가 다른 일본의 소비자에게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필리핀의 경우는 광고시장이 미국 광고대행사들에게 완전점거당한 형세이다.

우리의 주체성이 일본인의 수준인가 필리핀인의 수준인가를 비춰보는 것도 개방여부를 쉽게 판단하는 한가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약력
▲본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대학원 수료
▲현재 종합광고대행사 나라기획 근무

병무청 공고 제1호

1986년도 징병검사 및 병역처분 기준공고

1986년도 징병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 무 청 장

1. 징병검사 대상자
○'67년1월1일—'67년12월31일 출생자(19세)
○기타 연기사유가 해소되거나 연기기간이 끝난자

2. 거주지 징병검사 출원안내
○출원대상 : 본적과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출원기일 : 거주지 구, 시, 군 징병검사 개시 30일전까지
○출원서류 : 거주지 징병검사 원서1부(단, 본적지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첨부)
○출원관서 :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

3. 징병검사 연기대상

연기대상	처리절차	참고사항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시, 도 교육감및 대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학적보유자명부에 의하여 처리(단, 대학 이상은 제한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한자)	○제한연령 전문대학 : 22세이내에 졸업이 가능한자 대 학 : 24세이내에 〃 대 학 원 : 26세이내에 〃 ※연기된 자는 졸업하는 전해에 징병검사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지방병무청장의 출국허가에 의하여 연기	○23세까지 연기
○범죄로 구속 또는 복역중에 있는자	○구속확인서, 수형인명표 또는 재소증명서에 의하여 연기	○구속 또는 재감중 연기
○질병중이거나 중병인 가족 간호 등	○징병검사기일 5일전까지 진단서 등 출원에 의하여 연기	○입원 또는 간호기간중 연기

○재학사유로 징병검사 연기를 받을 사람이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본적지의 구, 시, 읍, 면장에게 재학사유 신고 (전화 또는 우편도 가능)
○재학사유로 연기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재학중 입영을 원할 때에는 재학생 징병검사원 (이미 징병검사를 받은 자는 입영원) 을 본적지 구, 시, 읍, 면에 출원
※조기입영을 위한 발편으로 무작정 휴학을 할 경우 군입영계획 인원의 제약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불가하며, 그 기간 학업상의 공백만을 자초하는 결과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특수전문요원은 징병검사결과 합격자로서 문교부의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특례처분함.
※응시대상 및 시기 : 전기수료, 석사학위 취득자는 3월. 후기수료, 석사학위 취득자는 8월경

4. 가사사정에 의한 보충역 편입대상자및 구비서류

보충역편입대상	구비서류	출원기일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자 2.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자	보충역편입원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1부	징병검사기일 14일전까지 거주지 구, 시, 읍, 면에 제출하고 징병검사를 받아야함.
3.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	보충역편입원서 1부	징병검사기일 14일전까지 본적지 구, 시, 읍, 면에 제출하고 징병검사를 받아야함.
4. 전사·순직 또는 상이정도가 2급을 이상인 전·공상 군인의 자제중 1인	보충역편입원서, 호적등본, 전사·순직 또는 전·공상 사실확인서 각1부	

5. 87년도 거주지 입영 안내
○'86년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자(학적변동자 제외)는 '87년도부터 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니 징병검사를 받을 때에 정확한 주소(주민등록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육군 일반병 지원안내
○징병검사결과 보충역(방위소집대상)에 편입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및 면허증 소지자는 육군일반병 지원입영이 가능합니다.

7. 참 고 사 항
○국가기술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자는 징병검사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기술 직군으로 군에 복무하게 되므로 사회기술과 연계하여 개인의 기술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17세이전 출국자와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된 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징병검사가 연기됩니다.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정도에 따라 바로 병역처분하므로 병역면제원서를 거주지 읍, 면, 동에 출원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8.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의 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된 자 및 징병검사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9. 현역 및 보충역 처분 기준 안내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되는 기준

구분 \ 학력	고졸이상	고교중퇴·중졸	중학중퇴·국졸	국졸미만
현역입영대상	신체등위 1, 2, 3급	신체등위 1급	—	—
방위소집대상	신체등위 4급	신체등위 2, 3, 3급	신체등위 1, 2, 3, 4급	—
방위소집면제	—	—	—	신체등위 1, 2, 3, 4급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이 되는 사유

방위소집대상	○방위소집대상 인원이 부족한 취약지역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자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자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전사·순직또는 상이 정도가 2급을 이상인 전·공상 군인의자제중1인 ○3년미만의 수형자로서 현역복부는 부적격하나 방위소집 복무는 가능한자
방위소집면제대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자 ○3년미만의 수형자로서 현역및 방위소집 복무가 부적격한자 ○국민학교 중퇴이하자, 고아, 사생아,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기간산업체등에서 근무할 특례 보충역	○한국과학기술원생, 연구기관의 자연계 연구요원 ○방위산업및 기간산업체 기술자,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승선하는 해기사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될자로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자 ○학술, 예술, 체능 및 기능 특기자로서 특례심의위원회에 선발된자

○현역, 보충역 및 방위소집면제 등 병역처분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처분되고 있으며, 병무직원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가혹 외관상 두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질병(간질, 결핵, 정신질환, 내과질환등)이나 수형 또는 저학력 등으로 보충역이나 불합격된 것을 주치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유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청탁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충역편입 또는 불합격된 양 헛소문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보충역이나 병역을 면제시켜준다는 구실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하니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만약 이러한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신고센타 :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796호,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징병검사장)

10. 시·도별 구·시·군별 검사일정(본적지) ※개인별 징병검사 수검일자 및 장소는본적지 구·시·읍·면장이 수검일 20일전까지 통지합니다.

시도	구,시,군	검사기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2.12— 2.18
	구로구	2.19— 2.28
	강서구	3. 3— 3.10
	관악구	3.11— 3.21
	은평구	3.22— 3.31
	용산구	4. 1— 4.17
	영등포구	4.18— 4.30
	마포구	5. 1— 5.17
	서대문구	5.19— 5.31
	성동구	6. 2— 6.16
	중구	6.17— 7. 4
	종로구	7. 5— 7.26
	동대문구	8.11— 8.30
	성북구	9. 1— 9.17
	동작구	9.19— 9.30
	도봉구	10. 2—10.18
	강동구	10.20—10.30
부산직할시	김해군	3. 4— 3.12
	김해시	3.13— 3.15
	양산군	3.17— 3.22
	울산군중구	3.24— 3.27
	〃 남구	3.28— 4. 1
	울산방어진출장소	4. 2— 4. 3
	울주군	4. 4— 4.14
	부산부산진구	4.15— 4.28
	밀양군	4.29— 5.12
	부산중구	5.13— 5.19
	〃 동래구	5.20— 6. 2
	〃 남구	6. 3— 6.14
	〃 강서출장소	6.16— 6.18
경상남도	부산해운대구	6.19— 6.23
	〃 북구	6.24— 6.27
	〃 서구	6.28— 7. 9
	의창군	7.10— 7.16
	고성군	7.18— 7.26
	함안군	8.11— 8.20
	의령군	8.21— 8.27
	창녕군	8.28— 9. 8
	마산시	9. 9— 9.16
	부산동구	9.17— 9.27
	〃 사하구	9.29—10. 4
	〃 영도구	10. 6—10.17
	진해시	10.18—10.22
	창원시	10.23—10.25
	하동군	3.18— 4. 2
	남해군	4. 3— 4.17
	함천군	4.18— 5. 7
	사천군	5. 8— 5.17
	삼천포시	5.19— 5.22
	통영군	5.23— 5.29
	충무부시	5.30— 6. 3
	거제군	6. 4— 6.19
	거창군	6.20— 7. 1
	함양군	7. 2— 7.12
	산청군	7.14— 7.26
	진주시	8.11— 8.19
	진양군	8.20— 9. 4
	고령군	3. 4— 3.11
	창도군	3.12— 3.20
	달성군	3.21— 3.29
대구직할시·경상북도	경산군	3.31— 4. 9
	영천군	4.10— 4.25
	영천시	4.26— 4.29
	경주시	4.30— 5. 6
	월성군	5. 7— 5.22
	김천시	5.23— 5.26
	금릉군	5.27— 6. 7
	성주군	6. 9— 6.18
	의성군	6.19— 7. 3
	선산군	7. 4— 7.11
	구미시	7.12— 7.15
	대구중구	7.16— 7.26
	〃 동구	8.11— 8.20
	〃 서구	8.21— 8.30
	〃 남구	9. 1— 9. 6
	〃 북구	9. 8— 9.16
	〃 수성구	9.17— 9.22
	칠곡군	9.23—10. 2
	군위군	10. 4—10.11
	안동군	3.18— 4. 9
	안동시	4.10— 4.15
	영양군	4.16— 4.22
	청송군	4.23— 4.30
	봉화군	5. 1— 5.13
	영풍군	5.14— 5.27
	영주시	5.28— 5.31
	예천군	6. 2— 6.19
	문경군	6.20— 7. 2
	점촌시	7. 3— 7. 4
	상주군	7. 5— 7.26
경기도	삼척시	8.11— 8.13
	포항시	8.16— 8.22
	영일군	8.23— 9. 9
	영덕군	9.10— 9.23
	울진군	9.24—10. 4
	울릉군	10. 7—10. 8
인천직할시·경기도	시흥군	3. 4— 3. 8
	과천군	3.10— 3.10
	이천군	3.11— 3.18
	여주군	3.19— 3.26
	광주군	3.27— 4. 2
	용인군	4. 3— 4.11
	안성군	4.14— 4.22
	옹진군	4.23— 4.25
	안양시	4.26— 5. 1
	안산시	5. 2— 5. 3
	송탄시	5. 6— 5. 7
	광명시	5. 8— 5.10
	인천중구	5.12— 5.17
	〃 동구	5.19— 5.29
	〃 남구	5.30— 6.12
	〃 북구	6.13— 6.23
	성남시	6.24— 7. 3
	김포군	7. 4— 7.10
	화성군	7.11— 7.26
	고양군	8.11— 8.19
	파주군	8.20— 8.30
	강화군	9. 1— 9. 8
	평택시	9. 9— 9.10
	평택군	9.11— 9.20
경기도	부천시	9.22— 9.27
	수원시	9.29—10.11
	양평군	7.14— 7.26
	가평군	8.11— 8.16
	구리시	8.18— 8.18
	남양주군	8.19— 8.27
	포천군	8.28— 9. 6
	연천군	9. 8— 9.13
	동두천시	9.15— 9.17
	의정부시	9.19— 9.24
	양주군	9.25— 9.30
	백령·대청면	10. 1—10. 3
강원도	횡성군	3.18— 3.27
	화천군	3.28— 3.31
	원성군	4. 1— 4. 9
	원주시	4.10— 4.16
	춘천시	4.17— 4.22
	홍천군	4.23— 5. 2
	철원군	5. 6— 5.10
	양구군	5.12— 5.14
	인제군	5.15— 5.20
	고성군	5.22— 5.26
	속초시	5.27— 5.29
	양양군	5.30— 6. 2
	명주군	6. 3— 6.11
	강릉시	6.12— 6.16
	동해시	6.17— 6.21
	삼척시	6.23— 6.24
	삼척군	6.25— 7. 2
	태백시	7. 4— 7. 7
충청북도	정선군	7. 9— 7.15
	평창군	7.18— 7.26
	영월군	8. 1— 8. 8
	춘성군	8.21— 8.28
	보은군	3. 4— 3.12
	옥천군	3.13— 3.21
	영동군	3.22— 4. 1
	청원군	4. 2— 4.19
	청주시	4.21— 4.29
	음성군	4.30— 5.10
	충주시	5.12— 5.24
	충주군	5.26— 5.30
	단양군	6. 2— 6.10
	제천군	6.11— 6.18
	제천시	6.19— 6.23
	괴산군	6.25— 7. 7
	진천군	7. 8— 7.12
충청남도	대덕군	3. 4— 3. 8
	연기군	3.10— 3.15
	공주군	3.17— 3.28
	공주시	3.29— 4. 1
	논산군	4. 2— 4.21
	부여군	4.22— 5. 8
	대전동구	5. 9— 5.17
	〃 중구	5.19— 5.29
	천안시	5.30— 6. 2
	금산군	6. 3— 6.12
	서천군	6.13— 6.25
	당진군	6.27— 7.10
	서산군	7.12— 8.19
충청남도	대천시	8.21— 8.22
	보령군	8.23— 9. 1
	홍성군	9. 3— 9.13
	청양군	9.15— 9.22
	예산군	9.23—10. 6
	아산군	10. 7—10.16
	온양시	10.17—10.18
	천원군	10.20—10.30
전라남도	순창군	3. 4— 3.13
	무주군	3.14— 3.19
	장수군	3.20— 3.26
	고창군	3.27— 4.14
	임실군	4.15— 4.24
	남원시	4.25— 4.28
	전주시	4.29— 5.14
	군산시	5.15— 5.22
	이리시	5.23— 5.30
	정주시	5.31— 6. 5
	옥구군	6. 7— 6.16
	진안군	6.17— 6.25
	부안군	6.26— 7. 8
	완주군	7. 9— 7.26
	김제군	8.11— 9. 1
	정읍군	9. 2— 9.22
	남원군	9.23—10. 7
	익산군	10. 8—10.21
전라남도	곡성군	3. 4— 3.11
	함평군	3.12— 3.21
	장성군	3.22— 3.31
	나주군	4. 1— 4.16
전라남도	영암군	4.17— 4.28
	목포시	4.29— 5. 6
	영광군	5. 7— 5.20
	광주동구	5.21— 5.27
	〃 서구	5.28— 6. 3
	〃 북구	6. 4— 6.11
	순천시	6.12— 6.16
	나주시	6.17— 6.19
	화순군	6.20— 7. 3
	담양군	7. 4— 7.15
	구례군	7.16— 7.26
	보성군	8.22— 8.27
	광산군	8.28— 9.10
	강진군	9.11— 9.22
	완도군	3.18— 3.28
	해남군	3.29— 4.14
	진도군	4.15— 5. 8
	신안군	5. 9— 5.19
	무안군	5.20— 6. 5
	함흥군	6. 7— 6.19
	고흥군	6.20— 7.12
	여천군	7.14— 7.26
	여수시	8.11— 8.18
	여천시	8.19— 8.21
	광양군	8.22— 8.30
제주도	서귀포시	9. 1— 9. 4
	남제주군	9. 5— 9.13
	제주시	9.15— 9.23
	북제주군	9.24—10. 8